

[첨 부 1]

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6- 호

2016년도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지원사업 공모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자활대상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등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6년 3월 일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신청자격

-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서대문구에 등록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(기관)·단체

제외대상 단체

- ①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(법인)
- ② 유사단체(법인) (인적·물적 구성의 유사)의 이중 신청
- ③ 1년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대상자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단체(법인)
- ④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(법인)

2. 사업추진기간 : 2016. 4월 ~ 11월

3. 공모사업

- 자활대상자 대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
- 자활대상자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
-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 조사연구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제외대상 사업

- ①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
- ② 경상적 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급식비, 사무실임대료)가 주된 사업
- ③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 등)관련 사업
- ④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
- 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형태의 사업
- ⑥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
4. 신청사업 수 : 1개단체 1개사업 지원

5. 사업수혜대상 : 서대문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자활대상자

6. 지원규모

○ 총사업비 : 금20,000천원

○ 지원한도 : 1개단체 1개사업 최고 1천만원 범위내 지원

※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·결정되며,
기금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후 지원사업 계획서를 수정 제출

7. 신청기간 및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15. 3. 24(목) ~ 3. 31(목)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이메일(jjjw0621@sdm.go.kr) 또는 사회복지과(생활보장팀)
직접 방문 USB 저장 제출

○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(☎330-1607)

○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8. 신청서류 : 서대문구청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

구청소식 > 공고 > 고시공고에 서식 게재

가. 2016년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지원사업 신청서 1부 [제출서식 ①]

나. 단체(법인)현황 1부 [제출서식 ②]

다. 단체(법인)추진사업 현황 1부 [제출서식 ③]

라. 지원사업 계획서 1부 [제출서식 ④]

마.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[제출서식 ⑤]

바. 단체(법인) 등록증 사본 및 정관(회칙) 1부

9. 공모사업 선정 및 발표

- 심사 및 선정 : 2016년 4월중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- 선정기준
 - 사업 목적·지원 사업(프로그램내용 등)·금액 산정의 적정성
 -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
 - 사업수행 능력(운영 경력 등) 및 사업의 기대성과
 - 최근 1년간의 서대문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복지사업 추진실적 등
- 결과발표 : 2016년 4월 중 서대문구 홈페이지 (<http://www.sdm.go.kr>)의
구정소식 > 새소식 >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

10. 사업비 교부, 사업평가 및 정산

- 선정된 단체(법인)와 우리구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
- 사업비는 약정 체결 후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지원사업비 교부 신청서에 의거 지급
-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등)
- 사업완료 시 사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
11. 기 타
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을 교부받은 단체(법인)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사업비를 환수함
-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기타 문의 사항은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(☎330-1607)으로 문의